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9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김한규·문대림·김태년

위성곤 · 장철민 · 전진숙

진선미 • 박희승 • 민병덕

강훈식 • 양부남 • 박홍배

이원택 • 이용우 • 박정현

박민규 • 정진욱 • 강선우

모경종 • 이재강 • 이재정

김영환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,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, 그 중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.

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있어,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 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의

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의료 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2조 등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보훈병원에서"를 "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국가보훈부장관이"를 "국가보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"로, "보훈병원에"를 "의료시설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"보훈병원"을 "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"로 한다.

제42조의2 전단 중 "보훈병원에서의"를 "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의"로, "보훈병원 외"를 "해당 의료시설 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2조(진료) ① ~ ④ (생 략)	제42조(진료) ① ~ ④ (현행과		
	같음)		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5		
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<u>보</u>	<u>제1</u>		
<u>훈병원에서</u> 진료한다. 이 경우	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		
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			
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			
며, 그 감면된 비용은 <u>국가보훈</u>			
<u>부장관이</u> 예산의 범위에서 해	국가보훈부장관 또는 지		
당 <u>보훈병원에</u> 지급할 수 있다.	방자치단체의 장이		
	의료시설에 <u></u>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		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⑦		
해당하는 사람은 <u>보훈병원</u> 외	<u>제1항에 따른</u>		
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	의료시설		
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			
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			
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			
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			
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			
다.	.		

1. ~ 4. (생 략)

⑧ (생 략)

제42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 전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1. ∼ 4. (연행과 같음)	
⑧ (현행과 같음)	
제42조의2(재난상황에서의	진료)
	<u>제</u>
42조제1항에 따른 의료시	설에
서의	
<u>해당</u> 의료시설 9	<u> </u>
<u>.</u>	